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02
----------	-------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 반복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명확화(안 제7조)
- 다.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완화(안 제8조의2)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범위 명확화(안 제15조의3)
- 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명확화(안 제15조의4)
- 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 기준 완화(안 제16조)
- 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재공고·열람 및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2)
- 아.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범위 완화(안 제16조의3)
-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3조)
-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추가 신설(안 제23조)
- 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타.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안 제28조)
- 파. 경관지구안에서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위원회 자문 규정 신설(안 제35조)
- 하.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세차장 건축 허용(안 제37조)
- 거.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9조)
- 너.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안 제48조 ~ 제50조)

더. 자연녹지지역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안 제53조)
 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범위 신설(안 제54조)
 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안 제56조)
 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반복 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68조)
 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유소 건축 허용(안 별표 3 ~ 별표 6)
 어.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내 소형주택 건축 허용(안 별표 8, 별표 9)
 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안 별표 13)
 처. 그 밖에 조문 인용 문구 등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7조, 제46조, 제51조, 제52조, 제59조, 별표 3 ~ 별표 18)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업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바. 사전예고(결과) : 【붙임 5】

○ 입법예고 : 2025. 5. 28. ~ 2025. 6. 1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7건(반영 3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3건)

사. 기타 참고사항

1) 현행조례 : 【붙임 6】

2) 방침결정문 : 【붙임 7】

【붙임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일 위치에 불수용 사유 해소 등으로 재차 제안할 경우, 제안 횟수는 최초 제안을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나.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2제1호 중 “면적 : 5퍼센트”를 “면적: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높이 : 10퍼센트”를 “높이: 5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 3까지에 따라”를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이전”을 “이전부지”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 조례”를 “조례”로 한다.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 본문 중 “두”를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 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제곱미터,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제곱미터)”

를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50미터, 위락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로, “있는 대지에

건축”을 “건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경관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라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8호 중 “주차장”을 “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가지경관지구 :”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주거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7층 이하(지하층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하여 8층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

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한 경우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
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대부동 지역에 한정한다)”으로, “이하”를 “이
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취락지구 :”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
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공원 :”을 “자연공원:”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7
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를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한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제56조제2항 단서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등교육”
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본문 중 “횃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안전의 보완이 필요
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동일 위치에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제
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 또는 부결사유 해소 등으로 재상
정할 경우, 심의 횃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부터 별표 18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
례) 제16조제1항, 제16조의3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
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
한다)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 관 과		도시계획과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이 태 주
	도시계획팀장	이 광 재
	담 당 자 (연 락 처)	김 현 우 (481-2373)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제외)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 도료류 판매소

카.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타.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파.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거.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아.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이 조례 별표 4 자목의 공장
- 차.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타.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파.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하.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거.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더.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7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을 제외한다)
- 아.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 자.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9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9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마.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사.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아.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차.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바. <삭제 2016.04.20>
-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은 제외한다)
- 자.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대부동에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 다만,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2) 어업인의 기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 3) 농어업인 주택의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대부동을 제외한 지역은 기존부지내에서 증·개축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사.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차.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2)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3)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
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
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
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마.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바.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행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서 처리)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서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일 위치에 불수용 사유 해소 등으로 재차 제안할 경우, 제안 횟수는 최초 제안을 포함하여 3회를 초 과할 수 없다.</u>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 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 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 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 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 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판 나.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 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 5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
신문을 말한다)

나.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판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1. ----- 면적: 50퍼센트 -----

2. ----- 높이: 50

10퍼센트 미만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 「안산시 사무위임 규칙」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공동구)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 3까지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 ①·② (생략)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퍼센트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동구)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서 -----

----- 따른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전부
지 -----
-----.

제15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식
제

②·③ (생략)

④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
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
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
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다음 각 호
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
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
공

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본항신설 2021.11.10.]

⑥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⑦·⑧ (생략)

제15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

제15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례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
례로 정하는 금액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
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
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제
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
정할 수 있다.

⑥ -----

- 조례-----

1. ~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

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해발 40미터 미만인 토지 (해발표고 3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생략)

<신설>

지 않는 가설건축물) -----

-----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 두 -----.

-----.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② (생략)

<신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

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제곱미터,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8. (생 략)

<신 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 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

③ 제2항에 따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

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 건축물 중 -----

----- 생활숙박시설은

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
역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 및 생
활숙박시설 150미터, 위락시설 6
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
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안산신도시 2단
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생 략)

제2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
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8. ~ 16. (생 략)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의 규모) (생 략)

<신 설>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위락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

----- 건축-----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
도제한) -----

1. ~ 6. (현행과 같음)

7. -----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 16. (현행과 같음)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의 규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면
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 13.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상업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신설>

경관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라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주차장
및 세차장-----

9.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

1. ----- 시가지경관지구: -----

2. 일반주거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7층 이하(지하층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하여 8층 이하로 한다.

<삭 제>

3.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 4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

제46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내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영 제78조의 별표 23 및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경우

제46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일용품(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삭 제>

<삭 제>

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

<삭 제>

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
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
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
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
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따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
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
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
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
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
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삭 제>

<삭 제>

<삭 제>

⑥ ----- 따른 -

<삭 제>

<삭 제>

곤란한 경우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항신설 2017. 7.25.>

⑦ ~ ⑪ (생략)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삭제>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
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
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
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
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
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
략)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
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 략)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
과 같음)

② ----- 생산녹
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
녹지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한정
한다)-----

---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에는 40퍼센트 이하)---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
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
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1. 취락지구: -----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
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
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 ----- 자연
공원: -----

5. -----

농공단지: -----

6. -----

----- 제12호에 따른 준산
업단지: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
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
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
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
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
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생 략)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생
략)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
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
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초 · 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
중등교육-----.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
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
의 경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
하로 한다.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현행 제1
항과 같음)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영 제30조제
1항제2호-----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68조(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

----- 안전의 보완
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② 동일 위치에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 또는 부결사유 해소
등으로 재상정할 경우, 심의 횟
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 자. (생 략) 차.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도료류</u> 판매소 카. (생 략) 타.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u> 파.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 자. (현행과 같음) 차.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주유소(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u>, <u>도료류</u> 판매소 카. (현행과 같음) 타.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파.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u>동호</u>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 사. (생 략) 아.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u>동호</u>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u>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u>, 컴퓨터 및 <u>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 제조업</u>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생 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u>같은 호</u>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u>같은 호</u>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u>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u>, 컴퓨터 및 <u>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u>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현행과 같음)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도료류</u>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생략) 파.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하.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주유소</u>(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u>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u>), <u>도료류</u>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현행과 같음) 파.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하. 별표 1 제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 거.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u>동호</u>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 차. (생략)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도료류</u>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생략) 파.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하.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u>같은 호</u>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 차. (현행과 같음) 카.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u>주유소</u>(기존의 건축물에 한하며, <u>영 제93조제2항에 따른다</u>), <u>도료류</u>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타. (현행과 같음) 파.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하. 별표 1 제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 거.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u>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 시설은 제외한다) 마. (생 략)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교정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u> 아. ~ 자. (생 략)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u>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 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현행과 같음)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7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교정시설을 제외한다)</u> 아.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라.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 마. (생 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마.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u>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u> 나. ~ 라. (생략) 마.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u>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1) <u>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u>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u>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u> 나. (생략) 다.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u> 라. 별표 1 제27호의 <u>관광 휴게시설</u>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u>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1) <u>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u>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라. 별표 1 제23호의 <u>2의 국방·군사시설</u> 마. 별표 1 제27호의 <u>관광 휴게시설</u>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 마.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교정시설은 제외한다)</u> 마. (현행과 같음)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u>동법</u>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마. (생략) 바.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사.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u>같은 법</u>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마. (현행과 같음) 바.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사. 별표 1 제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 아.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동호</u>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 바. (생략)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u>식물관련시설</u> (축사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자.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같은 호</u>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u>식물 관련 시설</u> (축사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 자. 별표 1 제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 차.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생략)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u>기숙사</u>는 제외한다) 다. ~ 사. (생략) 아.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u>(<u>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u>은 제외한다) 자. (생략)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u>기숙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u>은 제외한다) 다. ~ 사. (현행과 같음) 아. 별표 1 제23호의 <u>교정시설</u>(<u>교정시설</u>은 제외한다) 자.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략)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동호</u>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같은 호</u>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 사. (생 략) 아. <u>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u> (<u>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u> 제 외한다) 자. ~ 차.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u>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 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u> 자.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u>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u> 다. ~ 라. (생 략) 마. <u>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 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 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제2호 아목(1) 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u>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u>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 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u>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u>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 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 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 략) 라. <u>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2)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생략)	물」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 다. (생략)	[별표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u>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u> 마. ~ 바.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u>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u> 마.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생 략) 마. <u>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u>1만제곱미터</u> 미만인 것(「<u>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u>」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u>자나</u>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 파. (생 략) 하. <u>별표 1 제29호의 야영시설</u>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u>10,000제곱미터</u> 미만인 것(「<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 파. (현행과 같음) 하. <u>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802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1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해발표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해발표고 기준 단서를 신설함.
-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녹지지역에 대한 용적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인용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의 교정시설은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각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기존 단서를 삭제함.
- 또한, 산업용지의 적정 기능유지를 위해 준공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내용 단서를 삭제하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일부에 대하여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수정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해발표고 기준을 신설함.(안 제16조)
-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용적을 완화에 관한 조문 인용 불부합 사항을 수정함.(안 제56조)

- 각 용도지역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의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수정함.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 준공업지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려는 내용 단서를 삭제함.(별표 13)
-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농수산물직판장과 관련한 사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수정함.(별표 16, 별표 18)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 제56조제7항 중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별표 16 및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7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 자.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바. <삭제 2016.04.20>
-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자.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 (마) 지방자치단체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하여 행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 (마) 지방자치단체
- 바.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일반적인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u>해발 40미터 미만인 토지 (해발표고 3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3.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일반적인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일반적인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u>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3.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등교육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등교육

-.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생략)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아. ~ 자.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마. (생략)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생략)

하는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생략)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을 제외한다)

아. ~ 자.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은 제외한다)

마. (현행과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현행과 같음)

하는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생략)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 자.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개정안과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개정안과 같음)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 사. (생략)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생 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
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
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 제3
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은 제외한다)

다. ~ 사. (생략)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교정시설은 제외한다)

자.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
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
25조에 따른 후계농어
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 사. (개정안과 같음)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개정안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
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5조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 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 시설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 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생략)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 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개정안과 같음)

마. (개정안과 같음)

바. (개정안과 같음)

사. ~ 아. (개정안과 같음)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생략)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 파. (생략)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 파. (현행과 같음)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

--1만제곱미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 파. (개정안과 같음)

하. 별표 1 제29호의 야영시설

하.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하. (개정안과 같음)